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673
결재일자	2015.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

담당	주무관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한길용	김문수	성기창	민지선	12/24 도일환
협 조				

2015년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5. 12.

교육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2015년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노숙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및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선방안과 함께 보고드립니다.

1.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감독 등)
- 市 자활지원과-7178('15.12.3.), -7295('15.12.7.)

2.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노숙인 복지시설 5개소
※ '15년 상반기 점검시설 2개소 및 보조금 미지원시설 1개소 미실시
- 점검기간 : 2015.12.8 ~ 12.11 (4일간)
- 점검자 : 시설 담당 공무원 2명
- 점검방법 : 수검자료 확인 및 현장 지도·점검
- 대상기간 : 2014.1월~12월 기간중 운영실태 전반
- 점검분야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및 인력 관리 등 운영 전반
 - 운영보조금, 기능보강 등 보조금 집행 적정성 및 예산회계
 - 후원금 관리, 물품관리, 시설안전, 운영지침 준수 여부 등
 -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제도권내 보호노력 등 시설 서비스

3. 점검결과

□ 총평

노숙인 복지시설의 운영의 공익성 및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설 운영위원회 정기 운영과 예산·회계 처리 및 입소자 관리에 있어 관련 규정 미준수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적출되었음. 입소자 사회복지를 위한 노력 등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시설 전파를 통해 운영상 개선방안 공유 조치가 필요함

□ 지적사항 현황 : 4개 분야 15건 적출

대상 \ 분야		인사 및 조직관리	입소자 관리	예산회계	후원금품 관리	시설안전	기타
계		6	3	5	1	-	-
자 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1	1	2			
	아침을여는집	2		1			
재 활	아가페의집	1	1	1			
	우리집공동체	1	1				
요 양	임마누엘의집	1		1	1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인사 및 조직관리

- 시설 운영위원회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 시간외근무명령 및 확인내역 일일결재 미확행
- 근로계약서상 계약서 근로자 교부 관련 문구 불명확

○ 입소자 관리

- 시설 입소자 신상기록카드 작성·관리 규정 미준수
- 시설 입소자 상담일지 작성·관리 규정 미준수

○ 예산회계

- 기능보강사업 준공감독조서 미작성
-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미준수
- 식자재 납품 검수조서 미작성
- 각종 협회비 운영보조금 지출 금지
-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회계서류 관리 미비

○ 후원금품 관리

- 후원금 영수증 발급시 기부금 유형 오발급

□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방향

- 예산회계 분야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별 시정조치 및 개선토록 주의 촉구
- 관련 규정 및 절차 미준수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해 사안별로 경중에 따라 시정 및 주의 조치, 기타 운영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안은 현장지도로 갈음

□ 수범사례

○ 자활프로그램 지속 운영을 통한 입소자 건강관리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태극권배우기를 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입소자 심신치료에 도움을 주고 자활의지 고취에 기여함.

○ 외부 지정후원금(공모) 유치 및 지역사회 연대사업 추진

- 아침을여는집
2014년도 전체 세입 276,241천원 대비 지정후원금 84,152천원(30.4%)으로 자활프로그램 운영, 기능보강, 사례관리, 월동난방비 등 보조금 외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한 시설 자구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무인택배사업에 시설 입소자 4명을 참여시켜 자활의지를 고양시킴.

○ 내실있는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 아가페의집

관련 규정에 의거 분기별 1회 운영위원회 운영을 준수하였고, 분기별 시설 사업실적, 예·결산, 차년도 사업계획, 시설 운영자문 등 실질적인 안건 논의 및 보고를 통해 시설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

4. 시설별 지적사항 세부내역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 2014년 기능보강사업 준공감독조서 미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감독하고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2014.5.12.~5.17 희망의집 외벽드라이비트 보수공사(기능보강)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완료후 준공감독조서를 미작성함.

○ 시설 입소자 신상기록카드 작성·관리 규정 미준수

「2014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노숙인 자활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자 신상기록카드(별지 제12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나, 2014년부터 2015.12월 현재까지 입소자 신상기록카드를 자체 서식으로 작성, 관리하여 관련 규정을 미준수함

○ 각종 협회비 운영보조금 지출 금지

2015년 상반기 서울시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각종 협회비를 보조금으로 지출금지토록 '15.3분기부터 교부조건에 명시함. '15.3.10 서울노숙인시설 연회비로 504천원을 보조금으로 기 지출하였고, 이는 시 점검결과 통보 이전 발생사항으로 향후 보조금 집행시 유의토록 현장지도함

○ 시간외근무 명령 및 확인 일일 결재 미확행

시간외근무는 근무일별 사전 시간외근무 명령에 의거 실시하고, 근무 다음날 전일 개인별 근무내역을 명령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나, 사전 시간외 근무 명령에 따른 근무일 익일 확인(결재)을 생략하고 개인별 시간외근무 명령 및

확인내역을 개인별 출퇴근결과조회서를 첨부한 월별로 결재받아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시간외근무 확인대장 서식 불명확부분이 있어 향후 일일 결재 확행토록 현장지도함.

□ 아침을여는집

○ 시설 운영위원회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거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 분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나, 시설 운영위원회를 2014년도 미운영, 2015년도 1회 운영하여 관련 규정이 명시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및 미개최에 따른 시설 운영 관련 심의 및 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미준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의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성립된 예산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14년도 시설 예산편성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 시간외근무 명령 확인내역 일일 결재 미확행

시간외근무는 근무일별 사전 시간외근무 명령에 의거 실시하고, 근무 다음날 전일 개인별 근무내역을 명령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나, 사전 시간외 근무 명령에 따른 근무일 익일 확인(결재)을 생략하고 개인별 시간외근무확인내역을 월별로 결재받아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시간외근무 확인대장 서식 불명확부분이 있어 향후 일일결재 확행토록 현장지도함.

□ 아가페의집

○ 시설 입소자 상담일지 작성·관리 규정 미준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2014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지

파악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나, 시설 자체 서식(관찰 및 상담일지)으로 상담일지를 작성·관리하여 관련 규정을 미준수함.

○ **식자재 납품 검수조서 미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제30조의2 내지 제40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하나, 2014년도 급식비 및 중식비 지출에 있어 식자재 납품에 따른 검수조서 작성을 누락함.

○ **근로계약서상 교부 관련 문구 불명확**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종사자 근로계약서상 ‘이 계약서는 편의상 갑이 보관한다’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시 당사자 쌍방이 보관·교부하는 문구로 변경토록 현장지도함.

□ **우리집공동체**

○ **시설 입소자 상담일지 작성·관리 규정 미준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2014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지 파악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나, 2014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관련규정에 의한 입소자에 대한 상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미준수함.

○ **시설 운영위원회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014년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거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 분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나, 시설 운영위원회를 2014년도 미운영, 2015년도 2회 운영하여 관련 규정이 명시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및 미개최에 따른 시설 운영 관련 심의 및 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임마누엘의집**

○ **시설 운영위원회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014년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거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 분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나, 시설 운영위원회를 2014년부터 2015년 12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명시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및 미개최에 따른 시설 운영 관련 심의 및 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후원금 영수증 발급시 기부금 유형 오발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에 의거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함에 있어, 2014년부터 2015년 12월 현재까지 기부금 유형을 법정기부금단체가 아님에도 법정(10)으로 잘못 발급하였음.

○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회계서류 관리 미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수입 및 지출의 발생 등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 소속을 구분하여야 하나, 수입 및 지출결의서를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연도 상반기 1년 단위로 분철하여 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구분, 분철토록 현장지도함.

5. 시설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목록

□ **총괄표**

관리번호	수감기관명	지적사항	처분내역
2015-0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기능보장사업 준공감독조서 미작성	【행정상】 주의
2015-02	"	시설 입소자 신상기록카드 작성·관리 규정 미준수	【행정상】 시정
-	"	각종 협회비 운영보조금 지출금지	현장지도
-	"	시간외근무명령 및 확인내역 일일결재 미확행	현장지도
2015-03	아침을여는집	시설 운영위원회 분기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행정상】 개선명령(1차)

2015-04	“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미준수	【행정상】 주의
-	“	시간외근무명령 확인내역 일일결재 미확행	현장지도
2015-05	아가페의집	시설 입소자 상담일지 작성·관리 규정 미준수	【행정상】 시정
2015-06	“	식자재 납품 검수조서 미작성	【행정상】 주의
-	“	근로계약서상 교부 관련 문구 불명확	현장지도
2015-07	우리집공동체	시설 입소자 상담일지 작성·관리 규정 미준수	【행정상】 시정
2015-08	“	시설 운영위원회 분기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행정상】 개선명령(1차)
2015-09	임마누엘의집	시설 운영위원회 분기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행정상】 개선명령(1차)
2015-10	“	후원금 영수증 발급시 기부금 유형 오발급	【행정상】 주의
-	“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회계서류 관리 미비	현장지도

□ 시설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내역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관리번호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처분
2015-01	<input type="checkbox"/> 기능보강사업 준공감독조서 미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에 의거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감독하고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2014.5.12~5.17 희망의집 외벽드라이브트 보수공사(기능보강)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완료후 준공감독조서를 미작성하였음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차후 동종의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주의
2015-02	<input type="checkbox"/> 시설 입소자 신상기록카드 작성·관리 규정 미준수 「2014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노숙인 자활 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자 신상기록카드(별지 제12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나, 2014년부터 2015.12월 현재까지 입소자 신상 기록카드를 자체 서식으로 작성, 관리하여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음	- 관련 규정에 따른 입소자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시정

○ 아침을여는집

관리번호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처분
2015-03	<input type="checkbox"/> 시설 운영위원회 분기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거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 분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나, 시설 운영위원회를 2014년도 미운영, 2015년도 1회 운영하여 관련 규정이 명시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및 미개최에 따른 시설 운영 관련 심의 및 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시설 운영위원회를 관련 규정에 의거 분기1회 정기개최하여 차후 동종의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2차 위반시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1차)
2015-04	<input type="checkbox"/>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미준수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차후 동종의	주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에 의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성립된 예산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14년도 시설 예산편성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	-------------------

○ 아가페의집

관리번호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처분
2015-05	<input type="checkbox"/> 시설 입소자 상담일지 작성·관리 규정 미준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2014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지 파악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나, 시설 자체 서식(관찰 및 상담일지)으로 상담일지를 작성·관리하여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음	- 관련 규정에 따른 입소자 상담일지를 작성·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시정
2015-06	<input type="checkbox"/> 식자재 납품 검수조서 미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제30조의2 내지 제40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하나, 2014년도 급식비 및 증식비 지출에 있어 식자재 납품에 따른 검수조서 작성을 누락하였음	- 식자재 납품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수조서상 검수자와 확인자 결재를 득할 것	주의

○ 우리집공동체

관리번호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처분
2015-07	<input type="checkbox"/> 시설 입소자 상담일지 작성·관리 규정 미준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2014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지 파악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나, 2014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관련규정에 의한 입소자에 대한 상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음	- 관련 규정에 따른 입소자 상담일지를 작성·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시정
2015-08	<input type="checkbox"/> 시설 운영위원회 분기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거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 분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나, 시설 운영위원회를 2014년도 미운영, 2015년도 2회 운영하여 관련 규정이 명시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및 미개최에 따른 시설 운영 관련 심의 및 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시설 운영위원회를 관련 규정에 의거 분기1회 정기개최하여 차후 동종의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2차 위반시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1차)

○ 임마누엘의집

관리번호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처분
2015-09	<input type="checkbox"/> 시설 운영위원회 분기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거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 분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나, 시설 운영위원회를 2014년도부터 2015년도 12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명시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및 미개최에 따른 시설 운영 관련 심의 및 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시설 운영위원회를 관련 규정에 의거 분기1회 정기개최하여 차후 동종의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2차 위반시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1차)
2015-10	<input type="checkbox"/> 후원금 영수증 발급시 기부금 유형 오발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에 의거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함에 있어, 2014년부터 2015년 12월 현재까지 기부금 유형을 법정기부금단체가 아닌에도 법정(10)으로 잘못 발급하였음	- 후원금 영수증 발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코드40)으로 발급할 것	주의

6. 향후 개선방안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등 관리상태 지속 확인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일제정비 시행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지적사항 관리 철저

○ 행정처분의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에 의거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별 처분기준 적용

7. 행정사항

시설별 지적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시설 조치결과 제출

○ 시설별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15.12.28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15.1.20한

따로붙임 시설별 확인서 각 1부.